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95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21. 6. 2.

판결 선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1,23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7.부터 2021. 6. 23.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99,26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은 그후 총 5회에 걸쳐 수정되었고, 최종 계약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공사를 수행하였다.

공사명	B 시설공사
당사자	도급인 피고 / 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6. 11. 8. ~ 2019. 4. 27.
공사대금	2,566,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선금으로 2,411,301,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준공검사결과 피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피고가 지급받은 선금보다 낮은 2,302,450,568원으로 정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선금에서 위 차액 108,850,43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75,151,170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위 부당이득반환 금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 33,699,260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10, 15,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제21조

제5항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이 지급된 이후 계약해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또는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선금잔액(선금미정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의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에서 반환 받아야 할 선금상당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난 후 원고로부터 받은 준공원가 계산서에는 피고가 수행한 실제 공사에 대한 금액은 공사계약내용에서 정한 사항의 91.33%에 해당하는 2,343,408,6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기에 날인한 사실(갑 제22호증),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451,301,000원의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0. 1. 7.경 피고에게 피고가 다른 공사현장(C 보수공사)에서 수행한 잔여공사대금 75,151,170원의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선금환수금액에서 상계한다고 통지한 사실(갑 제10호증)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금에서 준공원가계산서상의 실제 준공누계금액 및 원고가 상계한 위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32,741,230(=2,451,301,000-2,343,408,600-75,151,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약정된 바와 달리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5회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피고는 그로 인해 추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에 도 준공검사 전에 원고가 준공검시기 공사대금을 높게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원고는 실제 지급된 선금보다 공사대금을 낮게 평가하여 그 차액을 부당이득이라 구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1)

나. 판단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담긴 비용청구 포기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간접비 미청구서(갑 제21호증)를 준공검사 전에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 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면 준공검사시에 공사대금을 높게 평가해주겠다는 취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1) 이는 변론에서 피고가 주장한 사항을 선택한 것이다.